

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
번호

36

□ 제안이유

지방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변화된 세정환경에 반영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원 조사와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숨은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의 동기부여는 물론 징수책임제 구현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에 기여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부적절한 용어 정비(안 제2조 제3호)
 - “상발적인 제안으로”를 “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” 개정
-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단서규정 삽입(안 제3조 제1항 제1호)
 - 1년차 징수에 대한 포상금 하향 조정
 - 징수세액의 100분의 5 → 징수세액의 100분의 1
- 현실에 맞게 포상금액 상향 조정(안 제3조 제1항 제5호)
 - 1건당 3만원 →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
-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(안 제3조 제1항 제6호)
 - 도로·하천·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적발 제보한 자나
 -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·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적발 제보한 자 → 징수금액의 100분의 5
- 포상금 지급한도 신설(안 제3조의 2)
 -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
 -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
- 포상금지급신청자 명시(안 제6조 제1항)
 - “세무공무원”을 “세입금과징부서의 장”으로 개정
- 포상금 환수제도 신설(안 제8조)
 - 허위 등 부정시 환수
 -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시 환수
 - 환수시 이자율에 따라 가산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1984. 7. 4 제정되어 2000. 9. 8까지 3회에 걸쳐 개정되긴 하였으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사실상 변화되어가는 세정환경을 반영하는데 미비하였다 할 수 있었으나
- 금번 개정안은 1년차 징수포상금의 지급과 제안에 대한 포상금은 타시도·시군과 균형을 맞췄으며 지금까지 우리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, 포상금의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원조사와 징수활동을 지원하는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원들에게 체납세 징수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음.